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정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편집위원 백범석 교수 (경희대학교)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 국제법적 책임추궁은 가능한가?

박 병 도 (건국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날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발원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왜 우리 정부는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강력한 대응, 특히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저자세로 일관하는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월경성(transboundary, 越境性) 피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적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 피해국은 그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매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국제법상 국가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실제로 중국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책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월경성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사인(私人)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는지 여부, 셋째,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감소할 국제법상 국가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국외의 미세먼지 유발행위와 우리나라의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다섯째, 재판관할권은 어느 법원에 있는지 등의 여러 법적 쟁점들이 제기된다. 아래에서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미세먼지의 국외기여율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 추궁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국외 요인,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것

인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지름이 10 μ 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μ m보다 작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통과하여 체내로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의 발생원(發生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발전시설, 가정용 난방장치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공장이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 인위적인 물질들이다. 자동차배기가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중국 등 국외에서 발원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국외요인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외교적 대응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의 축적이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월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이 75%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¹ 한·중·일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LTP)²의 2013년의 미세먼지(PM2.5)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모델링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중 47.4%가량이 국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국(중국북동부, 중국북부, 중국동부)의 영향과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아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그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환경부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서울 탓’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렬하게 표명하였다.³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한국측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상

당한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것임에 틀림 없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중국발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 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관련한 쟁점들

1) 사인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발전시설, 가정용 난방장치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공장이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 인위적인 물질들이며, 이러한 물질들은 주로 다양한 사인(私人)의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책임 규칙에 의하면, 순전히 사인의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인의 미세먼지 유발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국에게 귀속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산업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경제활동이 중국 정부의 실효적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국에 귀속될 수 있다. 또한 사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일반국제법상의 규칙을 적용해서 판단해 보면, 중국의 산업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월경성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인의 행위이지만 중국에 귀속될 수 있다.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각국 국내법의 환경의무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미세먼지가 사기업 등 사인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하였다라도 중국에 귀속될 수 있다.

2) 위반한 의무 ■ 확정할 수 있는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경우, 발원국이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월경성 오염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게 인용되는 의무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국가의 의무,” 즉 월경피해금지주의(no-harm principle)이다. 월경피해금지주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이다. 상당한 주의는 행위 의무이다. 즉 국가는 월경성 오염피해를 예방하고 월경성 환경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all appropriate measures)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주의의무는 예방원칙과 사전주의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위법한 활동은 아니지만 자국의 영토 밖의 환경에 물리적인 결과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월경성 손해예방에 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이하 2001년 월경성손해예방규정초안이라 함)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심각한 월경성 피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최소화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국들은 신의성실로써 협력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국가는 월경성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기에 앞서 해당 활동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 예상 국가에 해당 사실을 통지 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월경성 오염피해의 방지와 관련한 상당한 주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심각한 월경성 피해의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월경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관행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절차적 의무는 환경영향평가의무이다.⁴ 또한 월경성 피해 위험의 예측이나 통고를 등한시하거나 관련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각한 월경성 피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된 경우 등은 상당한 주의 기준 위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심각한 월경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즉 미세먼지 발생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협의하고 관련 환경 정보를 통지했는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산업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월경성 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월경성 피해의 정도가 어느 일정 정도에는 도달해야 국제법이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의 정도 또는 내용에 관한 문제도 넘어야 할 장벽이다.

월경성 대기오염문제를 다룬 고전적 사례인 Trail Smelter사건⁵에서 중재법정은 ‘중대한’(serious) 피해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스톡홀름 선언 원칙²¹은 피해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다. 국제관행은 다양하다. 피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중대한(serious), 중대한 것 보다는 낮은 수준인 ‘심각한’(significant) 또는 ‘매우 심각한’(substantial) 수준의 피해를 국제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ILC)는 2001년 월경성피해예방규정초안에서 ‘심각한’(significant) 월경성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ILC의

견해에 따르면, 법적인 문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적어도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방해(nuisance) 또는 사소한 피해(insignificant harm) 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한다.

생각건대, 피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요구는 되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중대하거나 심각한 피해인지의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을 포함한 판단주체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1급 발암물질로 피해를 준다면 분명 절박한 위해(imminent harm)이며, 이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도 그 피해가 위에서 제시하는 중대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 이어야 하며, 최소한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단순한 생활방해’ 또는 사소한 피해 보다 더 큰 것” 이어야 할 것인 바, 그 피해가 이러한 정도 이상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4)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한가?

국내법 차원이든 국제법 차원이든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국가에 귀속되는 국제의무의 위반 행위와 다른 국가가 입은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는 월경성 피해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문제는 대기 오염, 연무 오염, 미세먼지 오염, 온실가스 오염(기후변화) 등과 같은 월경성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한 쟁점 중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오염기여자가 다수이고, 더욱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오염행위인 경우 그 피해가 방산(放散)하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Trail Smelter사건에서 중재법정은 피해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⁷ 중재법정은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판결 이유(ratio deciden)를

제시하여 양국의 자발적인 판정 이행을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 자료는 중재법정의 판정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데 기여하였다. Pulp Mills 사건에서 당사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양의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는 증거로 포장하였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즉 상당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한반도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한국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주장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5)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느 법원(예를 들어, 한국 법원, 중국 법원, 국제사법재판소(ICJ) 등과 같은 국제재판소 등)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여기서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국제재판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나 중국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 법원에 중국을 피고석에 앉히는 것은 국가면제 법리상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2017년 4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미세먼지 소송단이 한국 법원에 한국 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는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송관련 서류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한국으로 반송했다고 한다.⁸ 이는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응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 미세먼지 피해자 개인이 중국 정부 또는 중국내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구제가 어렵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또는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재판에 회부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러한 재판에 대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양국이 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국과의 국제소송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4. 국제법 책임 추궁의 한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대기를 오염시켜 인간·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비롯한 환경에 손실과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월경성 미세먼지 문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월경성 피해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규칙을 적용할 때 부딪히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더욱 더 증폭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재판이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더불어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어렵다.

실제로 월경성 환경오염 피해는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국제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드물다.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법적 근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린다. 더구나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국제소송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경우,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의 국가귀속여부 문제, 국제의무위반의 확정 문제, 상당한 주의 의무의 내용 또는 기준 문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피해의 경우에는 이런 문턱들은 더 높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국제소송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현실적 대응방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월경성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은 월경성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보된 위험 관리를 통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더욱 구체적 노력을 촉진·장려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보상이나 배상과 관련한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책임 법리와 규칙을 검토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직접 국제소송을 하거나 법적 책임을 실제로 묻기 위함이 아닐지라도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수사(legal rhetoric)로, 더 나아가 탄탄한 법적 논리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법적 주장을 마련하는 유의미한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법리는 월경성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 현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1 “1월 최악의 초미세먼지... 중국 영향이 평균 75%”, 한국일보 2019.2.6.

2 한·중·일 3국은 2000년부터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LTP)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공동연구는 일반적인 공동연구와는 달리 한·중·일 3국이 각각 연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의 결과는 20여년간 한·중·일 전문가들이 SO₂, NO₂, O₃, PM₁₀, PM_{2.5} 등의 월경(transboundary)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모델링에 대한 검증과 상호평가를 해온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LTP의 대표적 연구방법론은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모델링이다. 여기서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이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원에서 수용지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배출원에서의 수용지로의 기여도를 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국회입법조사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지표로 보는 이슈 제89호, 2017.5.12., 1면-4면).

3 “ "미세먼지는 서울 탓" 잡아떼는 중국...눈치만 보는 한국”, 2019년 1월 14일 JTBC 보도.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계획 중인 산업시설이 월경성 차원에서, 특히 공유자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상의 관행은 최근 들어 국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수락되고 있다’고 판결한 Pulp Mill사건에 이어서 2015년 Costa Rica/Nicaragua사건(*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and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에서 심각한 월경성 피해를 예방할 국가의 상당한 주의의무는 다른 국가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심각한 월경성 피해 위험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경우 관련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ICJ Reports(2015)*, p.720, para. 153).

5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Canada)*,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III*, p. 1905.

6 월경성손해예방규정초안 제1조.

7 *Trail smelter case*, p. 1965.

8 “韓 미세먼지 소송관련서류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中,” 서울경제, 2019.1.16.